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나. 공제세액 계산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 [(⑧×⑨)와 ⑩ 중 적은 값]
	500원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란: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소득)금액이 2021년 9월에 발생한 경우 "202109" 라고 적습니다.
2.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2021년 10월에 제출한 경우 "202110" 라고 적습니다.
3.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기재된 총 제출인원을 적습니다.
4.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란: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에 기재된 인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기한(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은 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원이 적용됩니다.(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에 제출한 경우: 300원)
6. "⑫ 공제세액"란: (⑧ × ⑨)와 ⑩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적습니다.